#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 안 번 호 6321

제안연월일 : 2024. 12.

제 안 자 : 행정안전위원장

### 1. 대안의 제안경위

의안명	대표발의자 (제출)	발의(제출) 일자	심 사 경 과
총포·도검·화약 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동진의원 (2202452)	2024.07.31.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2차 전체회의 (2024.11.20.)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회부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2차 법안심사제2소위(2024.11.25.) 상정/축조심사/의결(대안반영폐기)
	모경종의원 (2202454)	2024.07.31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2차 전체회의 (2024.11.20.)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회부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2차 법안심사제2소위(2024.11.25.) 상정/축조심사/의결(대안반영폐기)
	박주민의원 (2202534)	2024.08.02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2차 전체회의 (2024.11.20.)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회부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2차 법안심사제2소위(2024.11.25.) 상정/축조심사/의결(대안반영폐기)
	박정현의원 (2202555)	2024.08.05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2차 전체회의 (2024.11.20.)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회부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2차 법안심사제2소위(2024.11.25.) 상정/축조심사/의결(대안반영폐기)

민홍철의원 (2202574)	2024.08.05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2차 전체회의 (2024.11.20.)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회부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2차 법안심사제2소위(2024.11.25.) 상정/축조심사/의결(대안반영폐기)
임이자의원 (2202662)	2024.08.08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2차 전체회의 (2024.11.20.)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회부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2차 법안심사제2소위(2024.11.25.) 상정/축조심사/의결(대안반영폐기)
진종오의원 (2202880)	2024.08.16.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2차 전체회의 (2024.11.20.)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회부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2차 법안심사제2소위(2024.11.25.) 상정/축조심사/의결(대안반영폐기)
서일준의원 (2203040)	2024.08.21.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2차 전체회의 (2024.11.20.)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회부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2차 법안심사제2소위(2024.11.25.) 상정/축조심사/의결(대안반영폐기)
박충권의원 (2203939)	2024.09.11.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2차 전체회의 (2024.11.20.)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회부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2차 법안심사제2소위(2024.11.25.) 상정/축조심사/의결(대안반영폐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2차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2024. 11. 25.)는 위 9건의 법률안을 병합하여 심사한 결과, 이를 통합·조정하여 우리 위원회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3차 행정안전위원회(2024. 11. 28.)는 법안심 사 제2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에서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2. 대안의 제안이유

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신규 소지허가를 할 때 정신 질환 또는 성격장애 확인 서류의 제출을 의무화하고, 도검·분사기·전 자충격기·석궁 소지허가를 3년마다 갱신하도록 하며, 총포 등의 소지 허가 결격사유를 강화하고, 경찰청장으로 하여금 화약류 안전관리 계 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등 총포·도검·화약류 등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 하고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임.

#### 3. 대안의 주요내용

- 가. 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신규 소지허가시 정신질환 또는 성격장애 확인 서류 제출을 의무화함(안 제12조).
- 나. 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소지허가를 3년마다 갱신하도록 함 (안 제16조 등).
- 다. 총포 등의 소지허가 결격사유를 강화함(안 제13조).
- 라. 경찰청장으로 하여금 화약류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3조의2제3항)
- 마. 판매업의 허가와 변경허가를 분리하고 경미한 구조·시설·설비의 변경에 대해서는 허가 대신 신고사항으로 변경함(안 제6조의2 등).

바. 화약류 관련 기술상 기준을 경찰청장 고시사항으로 변경함(안 제18조제4항, 제20조제5항 등).

##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본문 및 단서 중 "제6조, 제6조의3"을 각각 "제6조, 제6조의2" 을 각다 "제6조, 제6조의4"로 한다.

제3조의2의 제목 "(총포 안전관리 계획의 수립)"을 "(총포 및 화약류 안전관리 계획의 수립)"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전단 중 "총포 안전 관리 계획"을 "총포 및 화약류 안전관리 계획"으로 하며, 같은 조 제3 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전단 중 "총포 안전관리 계획"을 "총포 및 화약류 안전관리 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총포 안전관리 계획"을 "총포 및 화약류 안전관리 계획"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총포 안전관리 계획"을 "총포 및 화약류 안전관리 계획"으로 한다.

③ 화약류 안전관리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화약류 안전관리의 기본방향
- 2. 화약류 제조, 판매 및 화약류저장소 설치 관련 허가 현황 및 적 정 허가수준 유지 방안
- 3. 화약류제조보안책임 및 화약류관리보안책임 관련 면허 현황 및 적정 면허수준 유지 방안
- 4. 화약류 제조, 판매 및 화약류저장소 관련 안전검사에 관한 사항
- 5. 화약류 안전관리 관련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 6. 그 밖에 화약류 안전관리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6조제1항 후단을 삭제한다.

제6조의2 및 제6조의3을 각각 제6조의3 및 제6조의4로 하고, 제6조의2 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판매업의 변경허가 등) 판매업자가 그 판매소의 위치·구조 ·시설 또는 설비를 변경하거나 판매하는 총포·도검·화약류·분 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종류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판매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판 매업자가 그 판매소의 구조·시설 또는 설비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변경사항을 판매소 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경찰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고,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신청인의 정신질환 또는 성격장애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제1항에 제3호의2 및 제3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5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6호의2 각 목 외의 부분 중 "다음"을 "제3호의3"으로, "5년"을 각각 "7년"으로 하고, 같은 호 각 목을 삭제한다.

- 3의2.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3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 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가. 「형법」 제114조의 죄
  - 나. 「형법」 제257조제1항·제2항, 제260조 및 제261조의 죄
  - 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 각 호의 죄
  - 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8조의 죄마.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및 제2항의 죄

제16조의 제목 "(총포 소지허가의 갱신)"을 "(총포·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소지허가의 갱신)"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

으로, "총포"를 "총포·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② 제12조에 따라 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소지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를 받은 날부터 3년마다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제18조제4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으로 한다.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6조의2제1항"을 "제6조의3제1항" 으로 한다.

제20조제5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으로 한다.

제22조제5항제2호 본문 중 "5년마다."를 "제16조제2항에 따른 갱신 신청 전까지"로 하고, 같은 호 단서를 삭제한다.

제26조제4항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으로 한다.

제45조제1항제3호 본문 중 "제6조의2"를 "제6조의3"으로 한다.

제45조의2제1항 본문 중 "제6조의3"을 "제6조의4"로 한다.

제70조제1항제2호 중 "제6조제1항·제2항"을 "제6조제1항·제2항, 제6조의 본문"으로 한다.

제70조의2제1항제2호 중 "제6조제1항·제2항;"을 "제6조제1항·제2항, 제6조의2 본문;"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도검·석궁에 관하여 제4조제2항·제3항, 제6조제1항·제2항,

제6조의2 본문, 제9조제2항 또는 제12조제1항·제3항을 위반한 자제70조의3 중 "총포"를 "총포·도검·석궁"으로 한다.

제71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호의2를 제1호의3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분사기·전자충격기에 관하여 제4조제2항·제3항, 제6조제1항·제2항, 제6조의2본문, 제9조제2항 또는 제12조제1항·제2항·제3항을 위반한 자

1의2. 제6조의3제1항·제2항을 위반한 자

제72조제4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제7호부터 제10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3호의2를 제6호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4호 및 제5호로 하고, 같은 조 제1호의2를 제3호로 하며, 같은 조 제1호의 2를 제2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6조의2 단서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한 사람

제73조제1호 중 "제6조의3"을 "제6조의4"로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1항의 개정규정(제18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 및 제28조제1항제4호에 따라 적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이 법 시행 이후 접수된 소지허가, 사용허가 및 면허의 신청 및 갱신 신청부터 적용한다.
- 제3조(도검·전자충격기·분사기·석궁의 소지허가 갱신에 관한 특례) 이법 시행일 전날까지 도검·전자충격기·분사기·석궁의 소지허가를 받은 자는 제16조제2항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소지 허가를 갱신하여야 한다.
  - 2004년 12월 31일까지 소지허가된 대상 : 이 법 시행일로부터 1
     년 이내의 기간
  - 2. 2005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소지허가된 대상: 이 법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의 기간
  - 3. 2014년 1월 1일부터 이 법 시행일 전날까지 소지허가된 대상: 이 법 시행일로부터 3년 이내의 기간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적용의 배제) ① 제2조제3	제3조(적용의 배제) ①
항제3호아목 및 자목의 장난감	
용 꽃불류와 자동차 긴급신호	
용 불꽃신호기에 대해서는 <u>제6</u>	
<u>조, 제6조의3</u> , 제7조, 제8조, 제	제6조의2, 제6조의4
10조, 제12조, 제13조, 제18조부	
터 제21조까지, 제23조, 제32조	
및 제35조를 적용하지 아니한	
다. 다만, 장난감용 꽃불류와	
자동차 긴급신호용 불꽃신호기	
에 관하여 제4조, 제9조 또는	
제25조에 따른 허가를 받는 자	
의 경우에는 <u>제6조, 제6조의3</u> ,	<u>제6조,</u>
제7조, 제8조, 제10조, 제12조,	제6조의2, 제6조의4
제18조, 제21조 및 제23조를 적	
용하지 아니한다.	
	,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3조의2(총포 안전관리 계획의	제3조의2(총포 및 화약류 안전관
<u>수립)</u> ① 경찰청장은 관계 행	리 계획의 수립) ①
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u>총</u>	
포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총포 및 화약류 안전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리 계획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국가경찰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생략)<신 설>

	-
	_
	-
,	_

- ② (현행과 같음)
- ③ 화약류 안전관리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야 한다.
- 화약류 안전관리의 기본방향
   화약류 제조, 판매 및 화약
   류저장소 설치 관련 허가 현
   황 및 적정 허가수준 유지
   방안
- 3. 화약류제조보안책임 및 화약 류관리보안책임 관련 면허 현황 및 적정 면허수준 유지 방안
- 4. 화약류 제조, 판매 및 화약

   류저장소 관련 안전검사에

   관한 사항
- 5. 화약류 안전관리 관련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 6. 그 밖에 화약류 안전관리에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사항

- ③ 경찰청장은 <u>총포 안전관리</u>계획의 수립·변경 또는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광역 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 자치도지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이나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이에 따라야 한다.
- ④ 경찰청장은 <u>총포 안전관리</u> 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한 경우 에는 관보에 게재하고,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고 하여야 한다.
- ⑤ 경찰청장은 제1항의 <u>총포</u>
   안전관리 계획을 집행하기 위
   한 세부계획을 수립·시행하여
   야 한다.
- <u>⑥</u> (생 략)

제6조(판매업의 허가) ① 총포·도 저 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 석궁의 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판매소마다 행정안전부령으로

<u>4</u>	총포	및	화약류
안전관리 계획-			
			•
<u> </u>			
안전관리 계획-			
			= -
<u>⑥</u>			<u>총포</u>
및 화약류 안전	관리	계	<u>획</u>
⑦ (현행 제6항			
세6조(판매업의 ㅎ			
		1 -	
	]가) (	1 -	

정하는 바에 따라 판매소의 소 재지를 관할하는 시·도경찰청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판매 소의 위치·구조·시설 또는 설비 단 삭제> 를 변경하거나 판매하는 총포. 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 기·석궁의 종류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 ④ (생 략) <신 설>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6조의2(판매업의 변경허가 등) 판매업자가 그 판매소의 위치 ·구조·시설 또는 설비를 변 경하거나 판매하는 총포·도검 ·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 ·석궁의 종류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판매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경찰청장의 허 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판매 업자가 그 판매소의 구조ㆍ시 설 또는 설비 중 행정안전부령 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 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변경사 항을 판매소의 소재지를 관할 하는 시 · 도경찰청장에게 신고 하여야 한다.

제6조의2(예술소품용 총포 등의 제6조의3(예술소품용 총포 등의

임대업 허가 등) (생략)

제6조의3(판매업자 및 임대업자 제6조의4(판매업자 및 임대업자 의 지위승계) (생 략)

제12조(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 | 저 전자충격기·석궁의 소지허가) ① 제10조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총 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 격기·석궁을 소지하려는 경우 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 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한다. <후단 신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총포 소지허가를 받으 려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정신 질환 또는 성격장애 등을 확인 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령으 로 정하는 서류를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1. ~ 3. (생 략)
- ② ~ ⑤ (생 략)

제13조(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 | 제13조(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 전자충격기·석궁 소지자의 결 격사유 등) ① 다음 각 호의 격사유 등) ① -----

임대업	허가	등)	(현행	제6조의
2와 같-	<u> </u>			

의 지위승계) (현행 제6조의3과 같음)

<b>–</b> <i>- - -</i>
제12조(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
전자충격기·석궁의 소지허가
①
<u>o</u>
경우 신청인의 정신질환 또는
성격장애 등을 확인할 수 있도
록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이
하다 <다서 산제>

- 1. ~ 3. (현행과 같음)
- ② ~ ⑤ (현행과 같음)

전자충격기·석궁 소지자의 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총 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 격기·석궁의 소지허가를 받을 수 없다.

1. ~ 3. (생 략) <u><신 설></u>

<신 설>

\_\_\_\_\_

- 1. ~ 3. (현행과 같음)
- 3의2.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 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3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기. 「형법」 제114조의 죄나. 「형법」 제257조제1항·제2항, 제260조 및 제261조의 죄
  - 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각 호의 죄
  - 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및제8조의 죄
  - 마.\_\_「스토킹범죄의 처벌 등

4. (생략)

6. (생략)

 5.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
 << 세>

 한 특례법」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강력범죄를 범하여 벌금
 형의 선고 또는 징역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2. <u>다음</u>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u>5년이</u> 지나지 아니하거나 금고 이상의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u>5년이</u> 지나지 아니한 사람가. 「형법」 제114조의 죄나. 「형법」 제257조제1항·제2항, 제260조 및 제261조의 죄

 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
 <삭 제>

 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8조의 죄

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및 제2항의 죄

4. (현행과 같음) <사 제>

6. (현행과 같음)	
6의2. <u>제3호의3</u>	
	<u>7년이</u>
<u>7년이</u>	
<u>&lt;삭 제&gt;</u>	
<u>&lt;삭 제&gt;</u>	

6의3. ~ 7. (생략)

② · ③ (생 략)

제16조<u>(총포 소지허가의 갱신)</u> ① (생 략)

<신 설>

- ② 제1항에 따라 총포 소지허가의 갱신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정신질환 또는 성격장에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행정안전부렁으로 정하는 서류를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③ <u>제1항</u>에 따른 허가 갱신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렁으로 정한다.
- 제18조(화약류의 사용) ① ~ ③ (생 략)

	6의3. ~ 7. (현행과 같음)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	16조(총포・도검・분사기・전
	<u>자충격기·석궁 소지허가의 갱</u>
	<u>신)</u>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2조에 따라 도검・분사
	<u>기・전자충격기・석궁의 소지</u>
	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를 받은
	날부터 3년마다 이를 갱신하여
	<u>야 한다.</u>
	③ <u>제1항 및 제2항총</u>
	<u> 포・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u>
	<u>· 석궁</u>
	<u>④</u> 제1항 및 제2항
제	18조(화약류의 사용) ① ~ ③
	(현행과 같음)

기준에 따라야 한다.

#### ⑤ (생략)

제19조(취급 금지) 다음 각 호의 저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을 취급(제조·판매·수수·적재·운반·저장·소지·사용·페기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그들에게 이를 취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6조의 2제1항에 따른 총포·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을 제12조제 3항에 따라 해당 영화 또는 연극 등을 위하여 일시 소지하는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 3. (생략)

- 제20조(총포·화약류의 폐기) ① 조 ~ ④ (생 략)
  - ⑤ 화약류의 폐기는 <u>대통령령</u> 으로 정하는 기술상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 제22조(교육의 실시) ① ~ ④ 저 (생 략)
  - ⑤ 총포·석궁의 소지허가 또는

⑤ (현행과 같음)
데19조(취급 금지)
<u>제6조</u>
의3제1항
<b></b> .
1. ~ 3. (현행과 같음)
제20조(총포·화약류의 폐기)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부령으로 정하는
세22조(교육의 실시) ① ~ ④
(현행과 같음)
(5)

제28조에	따른 민	변허를	받은	자
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제1형	·의
교육을 디	-시 받이	<b>나</b> 야 한	다.	

- 1. (생략)
- 2. 석궁의 소지허가를 받은 자:
   5년마다. 다만, 제47조제2항
   에 따라 석궁이 보관된 경우
   에는 반환 신청 전까지 교육
   을 유예한다.
- ⑥ (생략)
- 제26조(화약류의 운반) ① ~ ③ (생 략)
  - ④ 화약류를 운반할 때에는 그 적재방법, 운반방법, 운반경로, 운반표지 등에 관하여 <u>대통령</u> 령으로 정하는 기술상의 기준 과 제2항에 따른 화약류운반신 고증명서에 적힌 지시에 따라 야 한다. 다만, 철도·선박·항공 기로 운반하는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 제45조(제조업자 등에 대한 행정 처분) ① 허가관청은 제조업자, 판매업자 또는 임대업자가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

<u>.</u>
1. (현행과 같음)
2
-제16조제2항에 따른 갱신
신청 전까지 <단서 삭제>.
<u>0.9 .07171 \0.71 \0.717.</u>
② (컨케키 키Ó)
⑥ (현행과 같음)
제26조(화약류의 운반) ① ~ ③
(현행과 같음)
4
<u>행정</u>
 안전부령으로 정하는
,
제45조(제조업자 등에 대한 행정
처분) ①

하여야 한다. 다만,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 1.·2. (생략)
- 3. 제4조·제6조 및 제6조의2에 따른 제조·판매·임대시설 설비를 갖추지 못한 경우 또는 제5조(제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제5조제8호(제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해당하게 된 법인 또는 단체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사유를 해소한 경우는 제외한다.

4. ~ 8. (생략)

② (생 략)

제45조의2(행정처분 효과의 승계) 저

① 제4조의2 및 <u>제6조의3</u>에 따른 제조업자·판매업자·임대업자의 지위승계가 있는 경우 종전의 제조업자·판매업자·임대업자

·
1.·2. (현행과 같음)
3제6조의3
<u>.</u>
4. ~ 8.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  45조의2(행정처분 효과의 승계)
①제6조의4

에 대한 제45조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기 간이 끝나는 날까지 양수인·상 속인에게 승계되며, 행정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일 때에는 양수 인·상속인에 대하여 그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 다만, 양 수인(상속에 의하여 승계를 받 은 자는 제외한다)이 그 영업 의 승계 시에 그 처분 또는 위 반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② (생략)

제7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생략)
- 2. 총포(권총·소총·기관총·포·엽 총·공기총만 해당한다)에 관 하여 제4조제1항·제3항, <u>제6</u> <u>조제1항·제2항</u>, 제9조제1항 또는 제12조제1항을 위반한 자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70조(벌칙) ①
1. (현행과 같음)
2
<u>제</u>
6조제1항·제2항, 제6조의2 본
<u>문</u>
(원세계 기호)
② (현행과 같음)

제70조의2(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저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생략)
- 2. 총포(권총·소총·기관총·포·엽 총·공기총은 제외한다) 및 화 약류에 관하여 제4조제1항· 제3항, <u>제6조제1항·제2항</u>, 제 9조제1항 또는 제12조제1항· 제2항을 위반한 자

<신 설>

3. (생략)

② (생략)

제70조의3(상습범) <u>총포</u>에 관하여 상습적으로 제70조 및 제70조 의2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 다.

제7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저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

메70조의2(벌칙) ①
1. (현행과 같음)
2
제6조제1항·제2항,
제6조의2 본문
<u>-</u>
2의2. 도검·석궁에 관하여 제4
<u>조제2항·제3항, 제6조제1항</u>
· 제2항, 제6조의2 본문, 제9
조제2항 또는 제12조제1항ㆍ
제3항을 위반한 자
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레70조의3(상습범) <u>총포·도검·석</u>
<u>궁</u>
·
에71조(벌칙)
川/1 <u>〜</u> (

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조제2항·제3항(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만 해당한다), 제6조제1항(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만 해당한다), 제 전자충격기·석궁만 해당한다), 제 6조의2제1항·제2항, 제9조제2항 또는 제12조제1항(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만 해당한다)·제2항(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만 해당한다)·제2항(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만 해당한다)·제2항(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만 해당한다)·제3항(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만 해당한다)을 위반한 자

<신 설>

<u>1의2.</u> (생 략) 2. ~ 8. (생 략)

<신 설>

-	_	-	-	-	-	-	-	-	_	_	_	-	$\overline{}$	-	$\overline{}$	$\overline{}$	-	-	-	-	-	-	-	-	-	-	-	_
-	_	-	-	-	-	_	-	_	_	-	_	_	_															

1. 분사기·전자충격기에 관하여 제4조제2항·제3항, 제6조제1 항·제2항, 제6조의2본문, 제9 조제2항 또는 제12조제1항·제2항·제3항을 위반한 자

1. 제6조의2 단서를 위반하여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한 사람

 1. (생 략)

 1의2. (생 략)

 2.·3. (생 략)

<u>3의2.</u> (생략) <u>4.</u> ~ <u>7.</u> (생략)

- 제7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4조의2제3항(<u>제6조의3</u> 및 제25조의2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1조제1항·제2항, 제17조제2항·제4항, 제31조제2항 또는 제37조제1항·제2항을 위반한 자1의2. ~ 4. (생략)

<u>2.</u> (현행 제1호와 같음)
<u>3.</u> (현행 제1호의2와 같음)
<u>4.·5.</u> (현행 제2호 및 제3호와
같음)
<u>6.</u> (현행 제3호의2와 같음)
<u>7.</u> ~ <u>10.</u> (현행 제4호부터 제7
호까지와 같음)
제73조(벌칙)
1 <u>제6조의4</u>
1의2. ~ 4. (현행과 같음)